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오지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472호)]



2026.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72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오지환 의원	발의연월일	2026.03.13.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충열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대상시설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이후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이용 불편이 반복되는 실정임.

이에 편의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설치 지원과 유지관리를 통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편의시설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2조)

다. 구청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 규정 (안 제3~4조)

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6조)

마. 편의시설 점검결과 및 지도·감독 사항 규정 (안 제7~8조)

바. 점검업무 대행,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03. 17. ~ 2026. 03. 22. (5일),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 전부개정 배경 및 취지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정합성 확보 필요

- 현행 조례는 2009년 제정되어 건축물의 허가·시공·사용승인 이전 단계에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점검’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는 편의시설의 형식적 설치를 방지하고 이동약자의 이용 편의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행정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 그러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의무 대상 확대,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확인업무 대행 근거 명문화,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체계 정비 등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 이에 따라 사전확인에서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확립되었으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사전점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의 정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법 체계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의 구조와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 제기됨.

2. 사전점검 중심 구조의 한계와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설치 이전 단계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설치 이후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편의시설은 단순한 설치 여부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적정성이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전단계 점검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에 설치 지원, 점검, 유지·관리, 지도·감독까지 포괄하는 전주기적 관리체계의로의 전환이 요구됨.

3. 지원 기능 확대와 접근성 개선 정책의 강화

- 최근에는 법상 의무대상시설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접근성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과 이동약자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 또한 위 같은 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차원에서도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 구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

4. 점검·지도·제재 체계의 연계 강화 필요

- 상위법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점검 결과를 허가·승인 절차에 '참조'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조치와의 구조적 연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이에 점검, 지도·감독, 법 위반 시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재정비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와 함께 상위법 개정사항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설치 지원과 통합 점검·관리체계로 확장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점검과 행정조치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구 차원에서 편의시설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입법적 취지가 있음.

■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1)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제7조2)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법 제8조3)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4)는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법 제9조의2제1항5)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
- 1)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 2)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전문개정 2015. 1. 28.]
 - 3)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28.]
 - 4)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 5)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법 제9조의3제1항6)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법 제10조제2항7)은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법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 제13조제1항8)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조의29)는 시설주관기관이 필요시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설주의 의무, 적합성 확인제도, 업무 대행, 지도·감독 및 제재, 설치 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 6)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7)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 8)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전문개정 2015. 1. 28.]
- 9)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 28.]

■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은 장애인등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치입법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체계적 정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목적 규정은 해당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기본 방향과 정책적 지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바, 안 제1조는 ‘설치 지원’과 ‘점검’이라는 행정적 수단을 명시하고, 그 결과로서 ‘안전 도모’와 ‘편의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의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음.

나. 안 제2조(정의)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로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상이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으로 보이고,
- 특히 본 조례가 상위법의 시행을 전제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용어의 의미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은 체계정합성 측면에 부합해 보이며,
- 다만, 향후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의 정책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 정의 규정을 추가하면 되는 등 본 조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기술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마련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이 지향하는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의 이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선언적·책무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관리·점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은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어 보이고,
- 특히 본 조항은 물리적 시설·설비의 이용뿐 아니라 ‘정보에의 접근’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공간적 접근성에 그치지 않고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현대적 권리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된 접근권 보장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디지털 환경의 확대에 따라 행정정보 및 공공서비스 이용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 다만, 본 조항은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 이행수단이나 범위는 후속 조항에서 보완될 사항으로 보이고, 이는 책무 규정의 성격상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창설

하는 규범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향후 세부 사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는 재정 여건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 이를 종합하면, 본 조항은 상위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여 구청장의 정책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서 체계상 적절하며,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책무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안 제4조(시설주의 의무)

개정안
<p>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 안 제4조는 대상시설의 설치·관리 주체인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편의시설의 실질적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인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 먼저 제1항은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자치법규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규정으로서, 상위법의 집행력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강화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의무를 명

시함으로써 형식적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능 유지까지 포
섭하고 있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의 의미가 있어 보이며,

- 다만, 상위법에서 이미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서 반복 규정하는 경우 이는 주의적·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 제2항은 시설주가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
의 지도·점검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적 협력 의
무를 명문화한 조항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식, 점검 절차의 한계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이 요구됨.

마. 안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 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상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도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환경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 특히 소규모 민간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법령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실제 이용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활환경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예방적 복지 행정의 관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 이러한 지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¹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로 보조금 또는 재정지원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지원 규모, 사업의 공익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여건과 시설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10)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될 경우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는 지침 등 하위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이를 종합하면, 본 조항은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바. 안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개정안
<p>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p> <p>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 안 제6조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제도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이해되며, 제1항은 사전점검의 대상 범위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형식적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 제2항은 구청장이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까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편의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의 부합 여부와 기능 유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행정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제3항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무 규정과 점검 규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 체계상 정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설주의 의무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행정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책임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 다만 본 조항은 ‘점검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점검의 범위·주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 부담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점검 계획의 수립, 점검 대상의 선정 기준, 점검 절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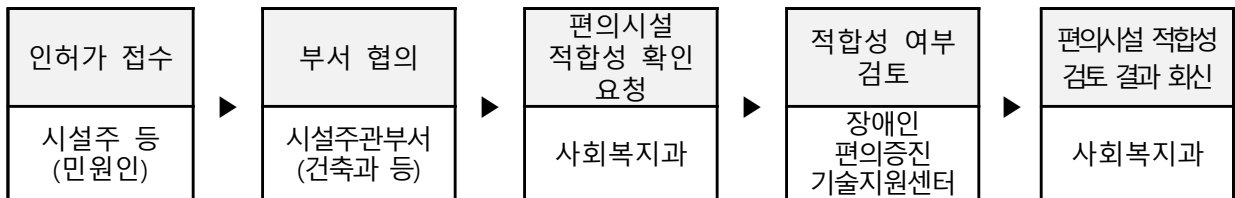
등에 관한 사항을 지침 등 하위 기준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본 조항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집행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구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한 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편의시설 점검 현황 등

- 사전점검 : 건축협의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
- 확인주체 : 시설주관부서(건축과, 사회복지과) 및 대행기관(편의증진센터)
- 건축협의 업무절차



○ 사후점검(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점검) 현황

- '23년 5월~9월 전수조사 : 전체 건축물 654개, 공원 132개 편의시설 전수조사
- '25년 5월~7월 실태조사 : '24년 승인된 건축물 118개 편의시설 설치 점검

○ 대행기관 : 서초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점검방법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 구청에 결과 보고 ▶ 구청(시설주관부서)에서 기준 미충족 시설에 시정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

사. 안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개 정 안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 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기한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점검 제도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 제1항은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 실시일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여 행정기록으로 남기고, 사후 관리 및 개선 조치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장치로 평가되며, 특히 제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보고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점검 결과의 적시성을 담보하려는 점에서 규정의 실효성이 인정되고,
- 다만, ‘5일 이내’의 기한이 점검의 규모나 난이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운영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이 다수이거나 현장 확인 사항이 복잡합 경우에는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 제2항은 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제1항의 기한 규

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경직된 기한 운영으로 인한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본 조항은 점검 결과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책임성과 사후 관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서 체계상 적절하고, 다만 제출 기한의 적정성 및 연장 사유의 구체성에 관하여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 안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안
<p>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 안 제8조는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점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집행 규정이라 할 것이고,
- 제1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의 행

정지도를 통해 위반을 예방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규정 체계상 타당성이 인정됨.

- 제2항은 지도·감독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경우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수단과 연계하도록 한 확인적 규정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제1항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감독의 범위·방법·주기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은 제재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고려한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안 제8조는 점검·지도·감독 및 제재의 체계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명확히 한 집행 규정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관련 지도점검 현황은 아래와 같고,

지도점검 현황

- 점검대상 : 작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편의시설 실태조사
- 점검방법 : 실태조사표에 따라 해당 항목별 현장점검 후 구 제출
 - 조사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휠체어 비치 등
- 점검기관 : 서초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수행인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 요원
- 사후조치 : 실태조사 후 미비시설은 구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 확인

(단위:건)

연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실태조사 (작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100	194	118

- 더불어 시정명령 결과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우리구 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시정명령 조치 현황

- 시 설 : 사용승인 건물 실태조사 후속조치, 건축과 요청, 민원 등

연도	시정명령 대상 시설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2023년	21개소	34건	없음
2024년	10개소	17건	없음
2025년	6개소	6건	없음

자. 안 제9조(업무의 대행)

개 정 안
제9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편의시설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되며, 특히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대행’으로 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와 용어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으로,
- 구청장이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서 이미 편의시설 관련 업무의 대행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 특히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점검이나 현장 확인 등은 일정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현행 조례의 ‘업무의 위탁’ 규정을 개정안에서 ‘업무의 대행’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탁’은 사무처리 권한의 귀속이나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점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상위법상 ‘대행’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조례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구청장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 아울러 대행 업무의 범위, 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지도·감독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실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 이를 종합하면 안 제9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관련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체계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위탁’에서 ‘대행’으로의 용어 정비는 법적 개념의 명확성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정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대행업체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의 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운영 현황 등

○ 대행업체 운영 현황

- 기관명 : 서초구청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개관 : 2005. 4. 1./ 센터장 권오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 3층
- 사업주체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 (회장 : 권오익)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행정요원 1, 기술요원 2, 전문모니터링요원 1)
- 사업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 등
- 운영방법 : 업무협약체결(3년)

○ 최근 3년간 실적

(단위:건)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건축협의)	771	914	955
건축허가	402	429	535
사용승인	269	291	302
실태조사	100	194	118

○ 예산집행현황(시비50%, 구비50%)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평균	2026년
예산액	275,374	234,584	252,152	254,036	244,800
집행액	246,188 (89.4%)	226,772 (96.7%)	242,871 (96.3%)	238,610 (93.9%)	

차. 안 제10조(교육 실시)

개정안

제10조(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적·지원적 수단을 마련한 규정으로 보이고,
- 제1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두고 있는바, 이는 의무 부과 중심의 사후적 규율에서 나아가 시설주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점검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평가되고, 특히 편의시설 기준이 기술적·전문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 또는 수시 교육을 통하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 제2항은 교육의 실시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이라는 사실행위적·집행보조적 사무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범주에 속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이 경우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안 제9조는 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0조제2항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념상 구별이 필요하고, 안 제9조의 ‘대행’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적 사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과 최종 책임

은 행정청에 귀속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비해 안 제10 조제2항의 ‘위탁’은 교육과 같은 집행보조적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격과 근거 체계가 다른 것이며,

- 따라서 동일 조례 내에 ‘대행’과 ‘위탁’이 병존하더라도 각 사무의 성격과 법적 근거가 상이하므로 개념상 충돌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 책임 구조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종합하면, 본 조항은 편의시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안 제9 조의 업무 대행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민간위탁 규정임을 전제로 할 때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구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2023년 ~ 2025년 교육운영 현황

연 도	교육일시	참석인원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 내 용
2023년	'23.2.22.(10시)	- 5명 (편의증진센터 직원 4명, 구청담당 직원 1명)	- 집합교육 (장소: 서초구 편의증진교육 지원센터)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의 의의
2024년	'24.9.28.(10시)			-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업무 처리 방법
2025년	'25.11.25.(10시)			- 적합성 확인 업무 관련 직원들의 역할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 특히 이번 개정은 일부 조문의 단순 수정에 그치지 않고, 현행 조례 전반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선언적 규범을 넘어 집행 중심의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도록 구조를 정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내용적으로는 편의시설 제도를 단순한 의무 부과 중심의 규율에 한정하지 않고, 점검·지도·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 활용과 예방적 교육 수단을 병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규제와 지원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 아울러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제재 및 업무 수행 체계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가 새로운 의무나 제재를 독자적으로 창설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용어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한 점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 다만 일부 집행 관련 규정은 강행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점검·지도·감독의 범위와 방법, 외부기관 활용 기준, 책임 구조 등을 내부 지침 등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실효성 낮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삭제하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편의시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조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향후 세부 운영기준의 정교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